## 의 안 번 호 제2800호

# 김포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1년 07월 08일 김포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1년 07월 08일 다. 상 정 일 자 : 2021년 07월 21일 라. 의 결 일 자 : 2021년 07월 21일

#### 2. 제안이유

- 시 캐릭터와 서체에 대한 보완, 추가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공식 상징물로 사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, 상징물 사용승인 대상을 명시하여 상징물 공공활용에 대한 여건을 개선
- 시기 제작 시 깃봉과 깃대의 준용 규정을 신설하여, 시기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시기의 깃봉과 깃대의 제작기준은 「대한민국국기법」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 지를 준용 (안 별표 2)
- 상징물-캐릭터('포수, 포미') 기본형 디자인 변경 (안 별표 3)
- 상징물-서체('김포평화고딕') 추가 지정 (안 별표 5)
- 상징물 사용승인 대상을 도시브랜드로 한정 (안 제9조제1항)

## 4. 검토의견

○ 본 안건은 상징물-캐릭터 기본형 디자인을 변경하고 상징물-서체('김포평화고딕') 추가 지정하며 상징물 사용승인 대상을 도시브랜드로 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안 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- 5. **질의 및 답변요지** : 생략
- 6. 토론요지 : 생략
- 7. **수정안의 요지** : 없음
- 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9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- 10. 주문사항 : 없음
- 11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